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57호
----------	------

제출년월일 : 2022. 02.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2년 7월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1	다 윷 (이 경 자)	고려대로7길 120 (동선동)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정순택)	2017.07.05 ~ 2022.07.04	49/38

1) 위탁기간 : 2022.07.05. ~ 2027.07.04.(5년)

2) 위탁심의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2022.04.예정)

나. 위탁 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